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08
----------	-----

2023년 7월 5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3. 5.30.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3. 회부일자 : 2023. 6. 1.
4. 상정일자 :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6.27.)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(2023. 6.30.)
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-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)

- 의안번호 제901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(안) 등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제안설명과 동일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908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) 제안이유

- 가.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하고 기금관리비가 감소함에 따라 2023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,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) 주요내용

- 가. 2022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'예치금 회수' 금액이 2,999백만원 증가 (6,583백만원 → 9,582백만원)하였음
 - 전세주택 보증금 집행잔액(2,497백만원), 이자수입 증가(269백만원), 민간융자금 회수 증가(215백만원), 기본경비 잔액(18백만원) 발생
- 나. 2023년부터 공모사업이 일반회계로 이관통합시행됨에 따라, 사업컨설팅 비용

등 ‘기금관리비’ 소요액이 21백만원 감액되었으며, ‘여유자금 예치’가 3,020백만원 증가하였음

※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미편성(일반회계 이관) : 7억원('22년) → 미편성('23년, △7억원)

다. 이에,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 3,020백만원 (131.5%), 기타 감액 21백만원(△51.2%)이 발생하였음

[수입계획]

(단위 : 백만원, %)

장·관·항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9,737	12,736	2,999	30.8
세 외 수 입	177	177	-	-
경 상 적 세 외 수 입	177	177	-	-
이 자 수 입	177	177	-	-
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	9,560	12,559	2,999	31.4
보 전 수 입 등	8,845	11,844	2,999	33.9
용 자 금 원 금 수 입	2,262	2,262	-	-
예 치 금 회 수	6,583	9,582	2,999	45.6
내 부 거 래	714	714	-	-
예 탁 금 및 예 수 금	714	714	-	-

[지출계획]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계 획변경안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9,737	12,736	2,999	30.8
장애인복지증진사업지원	7,400	7,400	-	-
장애인단체및사업지원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7,400	7,400	-	-
장애인전세주택지원사업	7,400	7,400	-	-
일반예산(재무활동)	2,296	5,315	3,020	131.5
보전지출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2,296	5,315	3,020	131.5
여유자금예치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2,296	5,315	3,020	131.5
기타	41	20	△21	△51.2
행정운영경비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41	20	△21	△51.2
기금관리비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41	20	△21	△51.2

3. 검토의견

-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29억 9,900만원)와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(30억 2,000만원)는 증액하고, 행정운영경비(△2,100만원)는 감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- 동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131.5%, 30억 2,0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고 다른 정책사업인 **행정운영경비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** 또한 당초 지출계획보다 △51.2%, △2,100만원 감액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〈표 3-1〉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 출 합 계	9,737	12,736	2,999	30.8
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	7,400	7,400	-	-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2,296	5,315	3,020	131.5
보 전 지 출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2,296	5,315	3,020	131.5
여 유 자 금 예 치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2,296	5,315	3,020	131.5
행 정 운 영 경 비 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41	20	△21	△51.2

※ 자료근거 : ①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지출계획,
②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2. 5.25) 재구성

○ 아울러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수·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²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, 필요 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2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

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
2. 장애인단체의 지도·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3.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
4.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
5.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
6.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
7.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
8.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
9.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1) 소위원회 구성

- 일 자 : 2023. 6.27.(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- 위원구성 :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(11명)
 - 위 원 장 : 이성배(주택공간)
 - 부위원장 : 강동길(주택공간), 김영옥(보건복지)
 - 위 원 : 송경택(행정자치), 김지향(기획경제),
이영실(환경수자원), 이종배(문화체육관광),
박철성(도시안전건설), 김영철(도시계획균형),
김용일(도시계획균형), 경기문(교통)

2)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

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29.(목) 14:00 ~ 16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30.(금) 12:00 ~ 13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VII. 부대의결 : 「생략」

VI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2023. 6.30.)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90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하고
기금관리비가 감소함에 따라 2023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,
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
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2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'예치금 회수' 금액이
2,999백만원 증가(6,583백만원 → 9,582백만원)하였음
- 전세주택 보증금 집행잔액(2,497백만원), 이자수입 증가(269백만원),
민간융자금 회수 증가(215백만원), 기본경비 잔액(18백만원) 발생
- 나. 2023년부터 공모사업이 일반회계로 이관통합시행됨에 따라,
사업건설팅 비용 등 '기금관리비' 소요액이 21백만원
감액되었으며, '여유자금 예치'가 3,020백만원 증가하였음
- ※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미편성(일반회계 이관) : 7억원('22년) → 미편성('23년, △7억원)
- 다. 이에,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 3,020백만원
(131.5%), 기타 감액 21백만원(△51.2%)이 발생하였음

[수입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장·관·항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9,737	12,736	2,999	30.8
세 외 수 입	177	177	-	-
경 상 적 세 외 수 입	177	177	-	-
이 자 수 입	177	177	-	-
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	9,560	12,559	2,999	31.4
보 전 수 입 등	8,845	11,844	2,999	33.9
용 자 금 원 금 수 입	2,262	2,262	-	-
예 치 금 회 수	6,583	9,582	2,999	45.6
내 부 거 래	714	714		
예 탁 금 및 예 수 금	714	714	-	-

[지출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9,737	12,736	2,999	30.8
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	7,400	7,400	-	-
장 애 인 단 체 및 사 업 지 원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7,400	7,400	-	-
장 애 인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	7,400	7,400	-	-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2,296	5,315	3,020	131.5
보 전 지 출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2,296	5,315	3,020	131.5
여 유 자 금 예 치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2,296	5,315	3,020	131.5
기 타	41	20	△21	△51.2
행정운영경비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41	20	△21	△51.2
기금관리비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41	20	△21	△51.2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유명 (☎ 2133-7447)